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87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채현일

문금주・박 정・임광현

이연희 · 홍기원 · 김원이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 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 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연장 등) ① 피청구인은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본문 또는 제3항"을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 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으

로부터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 사유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답변서 제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u><신 설></u>	행	개 정 안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연장 등) ① 피청구인은 제24조제1항 본 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답 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 유서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 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 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	<u>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u>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		

의 접수·처리)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u>본문</u> <u>또는 제3항</u>에 따라 피청구인으 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신 설>

의 접수·처리) ① (현행	과	같
<u>o</u>)		
②	- <u>본</u>	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	조	의 <u>2</u>
제2항 본문		
③ 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닷 닷	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3	피청	구
인으로부터 사유서가 >	제출	<u>된</u>
경우 사유서 부본을 청구	구인	[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